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0나823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0나8230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가단56509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영탁

변론 종결 2022. 3. 31.

판결 선고 2022. 4. 14.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가단56509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수대금을 피고가 대부분 부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한 사정을 감안하면 적어도 1/2 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한 1/2지분에 대하여만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위 1/2 지분 등기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64232(본소), 2017다264249(반소)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부부의 일방인 E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E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갑 제4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피고 부모님의 임대차보증금을 상속받았는지,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위변제했는지 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혼인생활 중 E에 대한 증여의 의사로 이루어졌음을 배제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1/2 지분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E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이 반복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영호

판사이경선

판사김리사

별지